

<참 조>

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보고서

2006. 3. 7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16

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

나. 운영위원회 회부일자 : 2006. 2. 27

다. 운영위원회 상정일자 : 2006. 3. 7

-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이재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역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함

- 연장목적 :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활동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장 처리코자 함
- 활동기간
 - o 당 초 : 2004. 10. 5 ~ 2006. 2. 28
 - o 변 경 : 2004. 10. 5 ~ 2006. 6. 3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임봉재)

-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평택항권역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기간을 금년 2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.
-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정 사안 발생시 이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을 정한 후 특위활동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음.(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)
- 동 특별위원회는 2004년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(8. 31) 구성 결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활동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 바 있고
- 또한 2005년 제20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(3. 24)와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(8. 30)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각각 6개월씩 연장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음.
- 그동안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2회에 걸친 회의와 선진항만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견학 1회, 국제세미나 참석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
-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장식 참석, 항만물류 배후단지 개발방안 워크숍 참석, 해외 항만물류현장교육 및 세미나 참석, 도의원과 시의원, 도 집행부 간부가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등의 많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.
- 따라서 금번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위 설치목적과 그동안의 활동사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